

#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50호

##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 의장 김 이 근

### 1. 자치법규명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정이유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를 확대하고 포상(격려)휴가를 재정립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일·가정 양립의 조직 문화 확산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문형식에 맞추어 재정비(안 제14조제2항제1호 ~ 제5호)
- 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안식휴가 일수를 5일로 신설함  
(안 제14조제2항제2호가목)
-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안식휴가 일수를 25일로 변경함  
(안 제14조제2항제2호라목)
- 라.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에 관한 내용을 재규정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3,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
----------	-----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서명일·김경수·김경희·김남수·문순규·박강우  
백승규·심영석·이우완·진형익·홍용채 의원 (11명)

## 1. 제안이유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를 확대하고 포상(격려)휴가를 재정립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일·가정 양립의 조직 문화 확산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문형식에 맞추어 재정비(안 제14조제2항제1호 ~ 제5호)
- 나.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안식휴가 일수를 5일로 신설함  
(안 제14조제2항제2호가목)
-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안식휴가 일수를 25일로 변경함  
(안 제14조제2항제2호라목)
- 라.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에 관한 내용을 재규정함  
(안 제14조제2항제6호)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여성공무원은”을 “여성공무원의”로, “위하여”를 “위한”으로,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모성보호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범위의 안식휴가.

제14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2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의”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수업휴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하려는 공무원은”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으로,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재해구호휴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본다”를 “볼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계산한다”를 “계산할 것”으로 한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 단,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14조(특별휴가) ① (생략)</p> <p>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1. 임신 중인 <u>여성공무원</u>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5일의 출산 전 <u>모성보호휴가</u>를 받을 수 있다.</p> <p>2. <u>장기 재직한 공무원</u>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u>안식휴가</u>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p> <p><u>&lt;신 설&gt;</u></p> <p>가.·나. (생략)</p> <p>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u>20일</u></p> <p>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u>공무원</u>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u>수업휴가</u>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p>	<p>제1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 <u>여성공무원의</u> ----- ----- <u>위한</u> ----- ----- <u>모성보호휴가</u> -----</p> <p>2. <u>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범위의 안식휴가.</u> ----- -----.</p> <p>가. <u>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u></p> <p>나.·다. (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p> <p>라. ----- <u>25일</u></p> <p>3. ----- <u>공무원의</u> ----- ----- ----- ----- <u>수업휴가.</u> ----- -----</p>

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4.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

4. -----  
-----  
----- 휴가

5. -----  
-----  
-----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한 -----  
----- 재해구호휴  
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 단,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다.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  
-----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  
-----.

1. -----  
-----  
-----  
- 볼 것

2. -----  
-----  
----- 계산할 것

3. -----  
-----  
----- 계산할 것-----  
-----  
-----.

④ (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임용될 때에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근무시간 중 화재·도난·사고 등에 대한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해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휴식권 보장)** ①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자제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

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회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및 신분증)**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해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공무원이 연가신청을 한 때에는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5일의 출산 전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4.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및 제8항의 육아시간 사용 시 하루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영 및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